

인조대 산림 장현광의 정치적 활동과 위상*

우 인 수

본고는 인조대에 산림으로 징소된 장현광의 정치적 활동을 살핌으로써 당시 중앙정계와 영남지역 내에서의 그의 위상을 가늠하고 설정하고자 하였다. 인조대의 정국은 서인이 주도하는 가운데 약간의 남인이 참여한 상태로 전개되었다. 중앙정계로부터 주목을 받은 영남 남인 출신의 산림은 장현광이었다. 그는 서인 산림인 김장생·박지계와 함께 특별한 예우를 받으면서 중앙정계에 나아갔다. 장현광의 출시는 반정으로 인해 어수선한 인심을 안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장현광은 몇 차례 상소를 통해 자신이 가진 지식을 종합으로 구사하면서 총론적이고도 원론적인 치국의 방안을 개진하기도 하였다. 군주를 세도의 주인으로 간주하는 군주 중심의 정치 인식 위에 군주가 표준을 세우는 도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에 대한 조정의 기대는 정묘호란이라는 국가의 위기상황 때 잘 드러났다. 조정에서는 삼남지역에 호소사를 배치하여 난국을 극복하려 하였는데, 장현광은 정경세와 함께 영남의 호소사에 임명되어 그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계운궁 복제와 원종 추송 등 왕실의 전례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일어났을 때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해 그의 정치적 활동상과 높은 위상을 살필 수 있었다.

그러나 그의 한계도 분명하였다. 산림 중에서는 김장생, 영남지역의 인사로는 정경세가 늘 장현광과 비교가 될 수 있는 존재였다. 존재감에 있어서 집권세력인 서인 산림 김장생에 비해 약하였다. 그리고 영남을 대표하는 존재이기는 하지만 오로지 하지는 못한 정도의 위치에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높은 위상과 현실적 한계를 동시에

* 이 논문은 2013학년도 경북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잘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 남인 산림 장현광이 처한 지점이 있다.

핵심 단어: 장현광, 산림, 건국, 정묘호란, 호소사, 원종 추숭

I. 머리말

장현광張顯光[1554년(명종 9)–1637년(인조 15)]은 인조반정 직후 대표적인 남인계 산림으로서 중앙정계에 징소徵召되었다. 인조반정은 서인을 주축으로 한 반정군이 광해군과 집권세력인 대북을 몰아내고 인조를 군주로 옹립한 사건이었다. 인조를 중심으로 한 반정공신들은 집권 초기 정국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광범위한 지지 획득을 필요로 하였다. 서인의 명망가 뿐 아니라 그동안 함께 정치에서 소외되었던 남인에게도 등용의 기회를 줌으로써 정국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북인에 의해 핍박받았던 남인의 입장에서는 조정에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였다. 드디어 일부 남인이 조정에 진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남인의 세력 확장으로까지 연결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남인이 정국의 안정에는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정권의 창출에 기여한 것은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도권을 쥔 서인이 인정하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의 역할에 머물러야 하는 한계가 근본적으로 있었다.

장현광은 바로 그러한 정치적 분위기에서 조정으로부터 주목받은 산림이었다. 당시 조정에서는 퇴계 이황의 학맥을 잇는 영남 남인을 대표하는 산림으로 장현광의 존재에 주목한 것이었다. 율곡 이이의 학맥을 잇는 기호지역 서인을 대표하는 산림으로서는 사계 김장생이 선택되었다. 영남의 장현광과 기호의 김장생이 인조 초기 정국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집권층의 시야에 포착된 산림이었다. 장현광은 인조초기 그런 위상을 가진

존재였다.

장현광에 대한 정치사회사적 측면에서의 연구는 그의 위상에 맞게 비교적 다양한 관점에서 시도된 바 있다. 우인수는 산림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정치사회사적 측면에서 밝히고자 하였고,¹⁾ 이수건은 정치사회사상과 영남학파내에서의 위치를 분석하였으며,²⁾ 설석규는 이기심성론을 통해 정치운영론의 특징을 밝히고자 하였다.³⁾ 박학래는 경세론을 분석하여 그 성격을 도덕질서의 회복으로 규정하였고,⁴⁾ 장동우는 예학적 문제의식을 밝히고자 예설을 분석하였으며,⁵⁾ 김학수는 여헌학파의 형성과 전개 과정을 분석하였다.⁶⁾

본고는 위의 연구성과를 참고하여 서인이 주도하는 인조대 정국에서 장현광의 정치적 활동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그의 위상을 살피고 동시에 그 한계를 드러내고자 한다. 먼저 장현광이 인조초에 산림으로서 징소받는 과정과 그 과정에서 표명한 시무에 대한 그의 생각을 살피겠다. 그리고 정묘호란시에 경상도호소사에 임명되어 의병을 규합하고 군량을 모우는 책임자로서 행한 활동과 의미에 대해 검토하겠다. 마지막으로 계운궁의 복제와 원종 추승과 같은 국가적 차원의 전례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그가 개진한 예론이 가진 비중과 의미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
- 1) 우인수. 1991. 『조선 인조대 정국의 동향과 산림의 역할』. 『대구사학』 41; 1994. 『17세기 초반 정국하 여헌 장현광의 위상』. 『여헌 장현광의 학문과 사상』. 금오공대 선주문화연구소; 1995. 『조선 인조대 산림 장현광의 사회적 위상』. 『조선사연구』 4; 2000. 『여헌 장현광과 선산지역의 퇴계학맥』. 『한국의 철학』 28. 경북대 퇴계연구소; 2011. 『정묘호란시 삼남지역 호소사의 활동과 그 의미』. 『조선사연구』 20.
 - 2) 이수건. 1994. 『여헌 장현광의 정치사회사상』. 『교남사학』 6.
 - 3) 설석규. 2000. 『여헌 장현광의 이기심성론과 정치철학』. 『이수건정년기념 한국중세사논총』; 2007. 『증화탕평의 설계자 여헌 장현광』. 한국국학진흥원.
 - 4) 박학래. 2005. 『여헌 장현광의 시대인식과 경세론』. 『유교사상연구』 22.
 - 5) 장동우. 2005. 『여헌 장현광의 예설과 예학적 문제의식』. 『유교사상연구』 24.
 - 6) 김학수. 2005. 『17세기 초반 영천유림의 학맥과 장현광의 임고서원 제향논쟁』. 『조선시대사학보』 35; 2009. 『여헌학파의 형성과 전개』. 『여헌 장현광연구』. 태학사; 2010. 『17세기 여헌학과 형성과 학문적 성격의 재검토』. 『한국인물사연구』 13; 2011. 『17-18세기 의성지역 여헌학파의 동향과 현실대응』. 『선주논총』 14.

II. 인조반정후의 징소와 시무책의 제시

인조반정후의 집권세력은 선조·광해군대에 시행된 산림 우대 정책은 계승하였다. 서인 반정공신들은 회맹의 자리에서 ‘무실국혼無失國婚’과 ‘숭용산림崇用山林’ 두 가지를 정권 유지를 위해 꼭 지켜야 할 것으로 합의한 바 있었다고 한다.⁷⁾ 서인이 외척으로서의 지위를 오로지함으로써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의도였으며, 산림을 숭상하고 증용함으로써 정권의 기반을 공고히 하려는 의도였다. ‘숭용산림’ 정책은 선조대 서인집권기 성혼의 경우와 광해군대 복인정권하 정인홍의 사례에서 얻은 교훈이라고 하겠다.⁸⁾ 전 시기에 확립된 산림정치의 효용성을 심분 활용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었다.

산림山林은 높은 학문과 덕망을 지니고 있었기에 많은 학자와 문하생들이 그 주변에 운집하였고, 그런 가운데 그들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사우문생 관계가 성립되었다. 장현광의 경우도 본거지인 인동과 주변의 선산, 성주, 의성, 영천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170여명에 달하는 수많은 문인을 거느린 전형적인 산림의 모습을 견지하고 있던 인물이었다.⁹⁾ 공신들은 산림을 등용하거나 후하게 대접함으로써, 산림의 영향력 아래에 있던 많은 일반 사류들을 자파에 우호적인 동조세력으로 확보하려 하였던 것이다.

인조조 초년에 산림으로서 사류의 중망을 모우고 있던 자는 장현광을 위시하여 김장생金長生·박지계朴知誠 등이었다. 인조는 영의정 이원익에게 당일의 급무는 은일자隱逸者의 징소徵召라며 산림 및 재야인사들의 등

7) 『당의통략』 인조조. “世傳 反正初勳臣會盟有密約二事 曰無失國婚 曰崇用山林 所以固形勢而收名實也”

8) 우인수. 2011. 『인조반정 전후의 산림정치』. 『남명학연구논총』 16.

9) 장현광의 강학활동과 문인집단에 대한 분석은 우인수. 2000. 앞의 『여현 장현광과 산산지역의 퇴계학맥』을 참고하라.

용 의지를 표명한 바 있었다.¹⁰⁾ 반정공신을 대표하는 김유와 이귀도 김장생의 정소에 가교駕驕를 보내는 특별한 우대책을 제시하였으며, 신흠은 장현광과 박지계를 추천하였다.¹¹⁾ 이어 민성휘·이경여 등도 산림 정소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권분·윤지경 등은 장현광의 정소를, 조성립은 김장생·박지계의 정소를 적극 주장하였다.¹²⁾

인조반정 직후 김장생은 이귀·김유·장유·최명길 등 반정의 주역들에게 보낸 장문의 편지에서 반정을 ‘불세지의거不世之義舉’로 극찬하였다.¹³⁾ 이귀 등은 김장생의 편지에 매우 고무되어 이를 인조에게 올리기까지 하였다.¹⁴⁾ 그리고 장현광도 누차에 걸친 정소를 사양하다가 마침내 조정에 출사함으로써 인조반정을 지지하게 되었다. 장현광은 논란은 있지만 넓은 의미에서 볼 때 한강 정구를 통해 퇴계 이황의 학맥을 계승한 인물이었다.¹⁵⁾ 그는 인조 초년 당시 서애 류성룡을 통해 퇴계의 학통을 계승한 우복 정경세와 함께 영남학파를 영도하는 위치에 있었다. 이에 영의정 이원익은 “장현광으로 말하면 산야山野 사람으로서 이제 또한 왔으니, 백성들의 향배向背는 진실로 알 수 없으나, 사류의 마음이 굳게 맺어진 것은 이미 알 수 있습니다.”¹⁶⁾라고 하면서 흠족해 하였다. 이 같은 사실은 당시 집권세력들이 산림을 통해 지지기반을 확보하려 한 점을 분명하게 해 준다.

산림 정소의 분위기가 무르익는 가운데, 인조대 집권층은 산림의 정소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산림직山林職을 신설하였다.¹⁷⁾ 산림직은

10) 『인조실록』 권1. 인조 원년 3월 22일 임차.

11) 『인조실록』 권1. 인조 원년 3월 25일 을묘·26일 병진.

12) 『인조실록』 권1. 인조 원년 3월 27일 정사. 4월 3일 임술·12일 신미 및 『인조실록』 권2. 인조 원년 5월 3일 임진.

13) 『인조실록』 권1. 인조 원년 3월 23일 계축. 『沙溪全書』 권2. 書. 與李玉汝金冠玉張持國崔子謙.

14) 『인조실록』 권1. 인조 원년 3월 23일 계축.

15) 장현광의 학통을 둘러싼 여러 견해에 대해서는 우인수. 2000. 앞의 『여현 장현광과 선산지역의 퇴계학맥』, 89-93쪽을 참고하라.

16) 『인조실록』 권5. 인조 2년 3월 5일 기미.

17) 이하 산림직에 대한 설명은 우인수. 1999. 『조선후기 산림세력연구』. 일조각. 20-24쪽에 의거하였다.

산림만이 임명될 수 있는 관직이었다. 이는 공신희맹시의 산림을 승용하는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었다. 인조 원년 성균관에 설치된 사업司業(중4품), 인조 24년 세자시강원에 설치된 찬선贊善(정3품)·진선進善(중5품)·자의諮議(중7품)가 산림직이었다. 효종 9년에는 성균관에 추가로 제주祭酒(정3품)가 설치되었다. 산림직이 성균관과 세자시강원에 신설된 것은 산림들이 교육과 관련된 직책에서 능력을 발휘하기가 용이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산림으로 하여금 큰 부담 없이 출사할 수 있도록 한 배려였다.

장현광은 인조 원년 사헌부 지평을 거쳐 신설된 산림직인 성균관 사업司業에 임명되었다.¹⁸⁾ 이듬해에는 장령·집의를 거쳐 정3품 당상관인 공조·이조참의에 특배되었다. 인조 4년에는 형조참판을 거쳐 사헌부 대사헌에 올랐으며, 그 후 여러 차례에 걸쳐 대사헌에 임명되었다. 인조 12년에는 공조판서를 거쳐 이듬해에 의정부 우참찬에 이르렀다. 일반적인 대우도 다른 관료와는 달리 파격적이었다. 의복이나 미찬米饌을 자주 하사 받은 것은 물론, 내의內醫의 간병과 약물藥物의 하사를 특별히 받기도 하였으며, 상경시나 하향시에는 역마를 내어주어 호송케하는 대우를 받기도 하였다.

장현광은 극진한 대우를 받으며 정소되었으나, 실제 서울에 머문 기간은 길지 않았다. 그는 대개 새로운 관직에 임명되면 가끔 다녀갔을 뿐이었다. 그의 나이가 이미 70세의 고령이었던 데도 원인이 있었고, 더 근본적으로는 은둔지향적인 산림의 기본 속성에 기인하였다.

어쨌든 광해군대의 긴 침묵을 깨고 출사한 장현광은 현실정치를 바라보는 자신의 인식과 시무에 대한 식견을 밝힐 수 있었다. 인조를 인견한 자리에서 자신의 생각을 직접 전하기도 하였고, 더러는 상소문을 통해 진달하기도 하였다. 그가 시급한 당면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자세하게 밝

18) 이하 장현광의 관직 임명 상황과 대우에 대해서는 『여헌전서』, 『연보』(인동장씨남산과 중친회, 1983) 해당조에 의거하였다.

힌 것은 인조 4년에 올린 상소문에서였다. 여기서 그는 군주가 표준을 세울 것(건극建極)을 강조해 마지않았다. 그는 광해군대를 어지러웠던 난세로 규정하였는데, 군주에 의해 표준이 전혀 세워지지 않은 데서 그 원인을 찾았다. 그 난세를 뒤엎고 반정으로 새롭게 만든 것은 인조의 공이라고 하면서 반정 자체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였다. 하지만 4년 정도 지나면서 반정 초기의 초심이 사라지고 점차 광해군대와 비슷해져가는 조짐이 나타나는 점을 우려하였다.¹⁹⁾ 안일한 조정 분위기의 쇠신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 상소문을 올리게 된 배경이었던 것이다.

다만 그는 지금은 근본적이고도 원론적인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으며, 세부 구체적인 방안을 개진할 상황이나 처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정국 운영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도 근본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건극’을 강조하였다. ‘건극’은 『서경』 홍범에 나오는 것으로 기자가 주나라 무왕에게 진언했다고 하는 홍범구주洪範九疇 중 다섯 번째 요목인 ‘건용황극建用皇極’에서 비롯된 표현이다. ‘황’은 군주를 가리키고, ‘극’은 북극의 극으로서 표준을 가리킨다. 따라서 건극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를 다스리기 위해 군주가 마음을 바르게 하고 몸을 닦아 대중지정大中至正의 표준을 세우는 것을 의미한다.

장현광은 군주가 표준을 세우려면 자신의 정성을 다하여야 한다면서 그 방도를 4가지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설명하였다.

19) 반정으로 성립한 인조정권의 집권자들은 이전 광해군대의 집권자들과 뚜렷한 차별성을 부각시키지 못한 채 국정운영의 한계를 노출시켰다. 인조 초년 민간에 유포된 ‘傷時歌’라는 노래는 반정과 공신들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 “아, 너희 훈신들이 스스로 뽐내지 말라. 그의 집에 살면서 그의 전토를 점유하고, 그의 말을 타며 그의 일을 행한다면, 너희들과 그 사람이 다를 게 뭐가 있나”(『인조실록』 권 9. 인조 3년 6월 19일 을미. “嗟爾勳臣 毋庸自誇 爰處其室 乃占其田 且乘其馬 又行其事 爾與其人 顧異異哉”) 라는 내용인데, 광해군대의 복인들과 다를 바가 없으며 공신들을 비롯하고 있는 당시인의 인식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 내용이다. 모역사건의 접찰과 그를 이용하여 정국을 안정시키려 한 행태도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결국 인조반정을 주도한 공신세력들이 국정에 대한 뚜렷한 전망을 가진 집단이 아니었음을 나타내주는 대목이다.

성을 다하는 차례는 그 절목이 넷인데 학문을 성취하는 것, 행실을 닦는 것, 道를 이루는 것, 德을 순순히 하는 것입니다. 덕은 도가 이루어져야 순수해지고, 도는 행실이 닦여야 이루어지며, 행실은 학문이 성취되어야 닦이는 것이니 이는 한 이치 가운데의 사업입니다. … 이미 학문이 성취되어 행실이 닦이고, 도가 이루어져 덕이 순수해지면 聰明 叡智로 천하의 이치를 다 알게 되고, 謙恭 勤儉으로 천하의 善을 모으게 되고, 寬仁 誠信으로 천하의 마음을 복종시키게 되고, 剛毅 簡重으로 천하의 情을 외복시키게 되고, 光明 正大로 천하의 뜻을 소통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천지 귀신도 오히려 어길 수가 없는데 더군다나 사람과 만물이겠습니까. 治平의 대업과 位育의 極功이 모두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임금의 표준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²⁰⁾

군주가 마땅히 하여야 하는 치국의 도리로 학문을 성취하고 행실을 닦으며, 도를 이루고 덕을 순순히 하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한 것들은 군주가 표준을 세우는 ‘건국’이 전제로 될 때에만 가능한 것이라고 하여, 군주의 ‘건국’이 치국의 출발점이라는 관점에서 그 중요성을 부각시켰던 것이다.

그리고 군주가 세도의 주인이기 때문에 표준을 세우는 도리는 군주가 한번 정하여 바꾸지 말고 반드시 극진하게 해야 하는 도리라고 강조하였다. 만약 군주가 이 도리를 자신이 담당하지 않는다면 이는 군주가 스스로를 버리는 것으로 간주된다고까지 하면서 그 중요성을 재삼 강조하였다.

이 상소를 받은 인조는 크게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 그냥 상소를 보고 잘 알았으며, 뛰어난 논설은 사람으로 하여금 눈을 씻고 보게 한다는 정도의 상투적인 반응에 그쳤다. 그 뒤로도 인조가 장현광의 상소를 얼마나 진심으로 받아들여 ‘건국’에 노력하였는지도 확인하기 어렵다.

이미 장현광은 인조 2년 이괄李适의 난이 일어난 직후 올린 상소에서 도 치국의 근본이 높고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간략하고 평이한 데 있다고 설파한 바 있었다.²¹⁾ 이어 정치의 요체로 세 가지를 지적한 바 있었는

20) 『인조실록』 권12. 인조 4년 5월 28일 기사.

데, 공검恭儉을 숭상하여 부화浮華를 절제하는 것, 덕화德化를 두텁게 하여 형살刑殺을 줄이는 것, 간정簡靜을 힘써서 번요煩擾를 그치게 하는 것 등이었다. 요컨대 반정이라는 비상수단에 의해 정권을 잡은 인조였기 때문에 더욱 삼가하며 정진하여야 할 덕목을 간략하고 평이하면서도 설득력 있게 전달한 데에 의의가 있었다.

또한 장현광은 시정時政의 선무先務를 묻는 영의정 이원익에게는 “오늘날 국가의 큰 근심은 오직 의심에 있다”²²⁾라고 설파하여 그의 감탄을 자아낸 적도 있었다. 당시 상황의 핵심 원인을 날카롭게 한 마디로 짚어낸 지적이라고 하겠다. 이는 장현광이 현실 상황과 문제에 대해 평소 진지한 고뇌를 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하겠다.

당시 장현광의 시무책은 구체적인 세부 방안을 제시한 것이라기보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원론적인 차원에서 개진한 것이었다. 이러한 장현광의 시무책을 두고 이수건은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추상적이고도 관념적 일반론에 그쳤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고 평가하였고,²³⁾ 설석규는 ‘중화탕평’의 정치운영론으로 과도하게 확대하여 의미 부여를 하기도 하였다.²⁴⁾

정치운영론을 논하기에는 총론에 국한되어 있을 뿐 구체적이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상황이나 처지를 적극 감안한다면 비록 실현가능성이 보장되거나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원론적인 의견 개진에도 일정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정국 운영의 중심으로서의 군주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점은 대부분 남인의 현실 인식 기조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21) 『인조실록』 권5. 인조 2년 3월 10일 갑자.

22) 『旅軒全書』, 『年譜』附錄. 神道碑銘(許穆撰).

23) 이수건. 1994. 『여헌 장현광의 정치사회사상』, 『교남사학』 6.

24) 설석규. 2000. 『여헌 장현광의 이기심성론과 정치철학』, 『이수건정년기념 한국중세사 논총』; 2007. 『중화탕평의 설계자 여헌 장현광』, 한국국학진흥원.

Ⅲ. 정묘호란시 호소사 활동

인조 5년(1627) 후금군이 압록강을 건너 의주를 함락하고 평양을 거쳐 서울을 향해 빠른 속도로 침입해왔다. 정묘호란이었다. 평산까지 진출한 후금은 더 이상의 진격을 멈춘 채 화의를 종용하고 있었다. 이에 대응하여 조정에서는 한편으로는 화의에 응하면서도 전국적 대비 태세를 강구하였다. 경기도 군사들은 남한산성에 집결시키고, 삼남의 군사들은 한강을 사수케 하며, 서북의 군사들은 후금의 배후를 노린다는 전략이었다.²⁵⁾

이 큰 틀의 전략에 따라 관군이 일선을 담당하는 가운데, 각지의 의병과 의곡에 기대어 난국을 타개하고자 하였다. 의병 모집과 군량 확보의 기지는 역시 삼남 지역이었다. 삼남지역민을 효유하는 총 책임자의 자리는 그야말로 중망을 지닌 인물이 맡지 않을 수 없는 자리였다. 이에 조정에서는 김장생을 양호호소사兩湖號召使, 장현광과 정경세를 경상좌우도호소사에 임명하여 삼남의 의병 모집과 군량 확보의 책임을 지웠다.²⁶⁾

충청도와 전라도 두 개 지역은 양호호소사라 하여 김장생 한 사람에게

25) 우인수. 2011. 『정묘호란시 삼남지역 호소사의 활동과 그 의미』, 『조선사연구』 20. 71쪽. 이하 장현광의 호소사 활동에 대한 서술은 위 논문의 장현광 관련 부분을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본고의 취지에 맞게 가감한 것임을 밝혀둔다.

26) 『인조실록』 권15. 인조 5년 1월 19일 정해. (以鄭經世張顯光爲慶尙左右道號召使 金長生爲兩湖號召使 從備局之請也) ‘號召’라는 말은 ‘마음속의 의를 불러 일으킨다’는 의미이겠는데, 호소사는 의병을 불러 일으키고 의곡을 모우며, 또한 그 의병과 의곡을 총괄하는 자에 대해 직함으로 사용되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정윤복이 東西路號召使에 임명된 바 있었다. (『선조실록』 권26. 선조 25년 4월 17일 병오.) 그리고 정묘호란이 일어나기 3년전인 인조 2년 이괄 난이 일어났을 때 노량진에서 삼강 지역민 300여명을 규합하여 진을 틀어쥐고 난적에 대응한 晉原府院君 柳根에게 三江號召使라는 칭호를 주어 그의 활동에 힘을 실어준 적이 있었다. (『비변사등록』 3책. 인조 2년 2월 12일.) 그리고 정묘호란 때 삼남지역 책임자에게 그 명칭을 사용하였고, 이후 영조대 무신난이 일어났을 때도 의병을 규합하는 책임자로 호소사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 (『영조실록』 권17. 영조 4년 4월 6일 병술.)

모두 일임한 데 비해 경상도 한 개 지역은 오히려 장현광과 정경세 두 사람에게 나누어 맡겼다. 애초에 신희 같은 이는 정경세 한 사람에게 전적으로 영남을 위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채택되지 못한 듯하다.²⁷⁾

장현광이 경상좌도인 인동, 정경세가 경상우도인 상주가 본거지인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장현광이 경상좌도호소사, 정경세가 경상우도호소사를 담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의정의 의병장에 차임된 신적도가 장현광을 경상좌도호소사, 정경세를 경상우도호소사로 지칭하면서 공문서를 바치고 있는 데서도 확인이 된다.²⁸⁾ 두 사람의 거주지인 인동과 상주는 둘 다 낙동강 중상류변의 서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활동 반경이 여러 부분에서 겹치는 면이 많았다. 실제로 장현광과 정경세 본인들은 주로 경상도의 상도 쪽에 머물면서 활동한 듯하다. 더구나 정묘호란이 워낙 단기간에 그쳐 호소사 활동 시기가 짧았기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당시 정경세는 둘째 아들의 장례를 위해 겨우 말미를 얻어 상주를 향해 내려오던 중 청주에 도착하였을 무렵 후금의 침범 소식을 듣고 바로 말머리를 돌려 서울로 향하였다. 1월 22일 수원에 이르렀을 때 호소사에 임명된 소식을 접하였다.²⁹⁾ 이를 뒤인 1월 24일 인조를 배알하여 몇 가지 긴급한 조치를 건의하고 논의하였다.³⁰⁾ 인조가 강화도를 향해 떠난 것과 거

27) 『인조실록』 권15. 인조 5년 1월 19일 정해.

28) 申適道, 『虎溪遺集』 권3. 「장의록」. 呈左道號召使張顯光文；同 呈右道號召使鄭經世文.

29) 『우복집별집』 권6. 「연보」. 인조 5년 1월 22일.

30) 정경세는 포수를 전방으로 빨리 보내어 우선 적의 예봉을 막음으로써 자강의 기틀을 마련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임금과 동궁이 각각 강화도와 남도지역으로 나누어 분담하여 백성들을 독려하여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그러고는 경상도 호소사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조치들을 서둘러 허가 받았다. 즉 이미 차정된 종사관 이윤우 외에 강대진과 박환을 종사관으로 더 차출하겠다고 하여 허락을 얻었으며, 산적이나 포수들의 모집을 위해 우림위의 공명첩 수백장과 또한 서얼허통첩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 또한 경상도 문관들이 서울로 올라오면 호종하는 데 불과할 뿐이니, 이들로 하여금 경상도에 머물며 곡식이나 의병을 모으게 하겠다는 점도

의 동시에 경상도를 향해 출발하여 2월 3일에 상주에 도착하였다.

이미 경상도지역에는 장현광과 정경세의 호소사 임명 소식이 전해져 있었고, 각 지역별로 의병장을 선정하는 자체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³¹⁾ 아무래도 현지에 거주하고 있던 장현광이 더 빨리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리하여 1월 28일 장현광에 의해 각 지역의 의병장들이 선임되기 시작하였다. 안동의 김시추, 예안의 이영도, 영천榮川의 권주, 예천의 장여한, 풍기의 광진, 봉화의 권극명, 진보의 김위, 청송의 조준도, 영해의 이시명, 용궁의 정윤목 등을 각 지역 의병장으로 차임하였다.³²⁾ 장현광은 의성으로 찾아온 청송의 조준도에게 의병조약을 작성하라고 명하기도 하였다.³³⁾

2월 3일 상주에 도착한 정경세는 도내에 격문을 보내어 통유하는 한편 경상도관찰사 김시양을 만나 시국에 대해 논의하였다. 다음날인 4일에는 선산에 가서 장현광과 만나 호소사 막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³⁴⁾ 이때 정경세가 호소사의 상사上使를 맡게 되었다는 기록이 예안에 거주하던 유력인사인 김령의 일기에 나온다.³⁵⁾ 물론 상사를 맡았다는 것은 두 사람 간의 상하 관계를 설정하는 것으로서 민감한 문제이다. 사적으로 편의상 그렇게 한 조처인지, 조정에게까지 보고되어 승인된 사항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정경세가 상사를 맡았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이 완전한 상하 관계로 설정된 것은 아닐 것이다. 장현광이 좌도, 정경세가 우도를 담당함

아되어 허가를 받았다. 『우복집별집』 권3. 경연일기. 인조 5년 1월 24일; 『국역 우복집』 권4. 222-226쪽; 『우복집별집』 권6. 부록. 연보. 인조 5년 1월 24일; 『국역 우복집』 권5. 36쪽)

31) 『계암일록(상)』 권4. (국사편찬위원회 영인본. 1997) 인조 5년 1월 25·26일. 671쪽. 이 때 이미 안동과 예안의 의병장 선임 논의가 시작되어 대개 인선의 윤곽이 드러났음을 알 수 있다.

32) 『계암일록(상)』 권4. 인조 5년 1월 28일. 672쪽.

33) 『여헌집속집』 권9. 『言行日錄略』. 門人趙遵道. “丁卯 虜大槍 時先生與愚伏先生爲號召使 差余爲義兵將 要與共贊兵謀 拜先生于義城 先生使之定義兵條約”

34) 『우복집별집』 권6. 『연보』. 인조 5년 2월 3일. 4일.

35) 『계암일록(상)』 권4. 인조 5년 2월 6일. 674쪽.

으로써 기본적인 담당 구역은 구분되어 있는 가운데, 전시에 의병체제를 통솔하여야하는 체제상 상하 관계를 설정하여 명령체계의 혼선을 방지하려는 차원에서 내려진 조치로 볼 수 있다.

그렇다고는 하나 두 사람의 인맥이 경상도의 상도 쪽에 중첩되어 있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뚜렷한 구분없이 편의대로 움직인 감이 있다. 정경세가 안동을 위시한 주변 좌도지역에서 활동한 것이나, 우도 지역에 해당되는 의병대장과 의병장에 장현광의 문인이 많이 포진한 것을 통해 볼 때 뚜렷이 구분되지는 않은 듯하다. 또 현실적으로 굳이 구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면도 있었을 것이다.

어쨌든 정경세가 약간의 우위에 있으면서 주도권을 쥐고 호소사 막부의 일을 추진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처음에 장현광은 의병이 되기 위해 모인 선비들을 모두 거느리고 전쟁터로 서둘러 나아가려고 하였는데, 마침 서울에서 도착한 정경세에 의해 저지되기도 하였다. 정경세가 이르기를, “선비들을 내몰아쳐 화살과 돌이 날리는 전쟁터로 들어가게 하는 것은 일에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못 될 것입니다. 명분만 있고 실체는 없으니 차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만류하면서 그 대신에 의곡을 모아 군량을 조달하는 업무에 집중토록 조치하였다.³⁶⁾ 그 일환으로 경상도호소사의 막부에서 군량을 총책임지는 관량관管糧官에는 이준을 차임하였으며, 각 지역별로 관량유사를 선임케 하였다.³⁷⁾

그러나 의병을 규합하는 일이 순조롭게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각 군현별로 크고 작은 갈등이 내재해 있었다. 예안에 거주하던 사족인 김령이 쓴 『계암일록』에는 당시 의병 차출 둘러싼 지역내 사족들 간의 갈등의 과

36) 『우북집별집』 권8. 부록. 언행록; 『국역 우북집』 권5. 143쪽. 강교년의 기록.

37) 『계암일록(상)』 권4. 인조 5년 2월 9일. 675쪽. 그 외 정경세는 경상우도의 거점 중의 하나인 상주의 의병장으로서는 류성룡의 아들로 상주에 거주하던 류진을 선임하였으며(류진, 『修巖集』 권2. 書. 與琴士益處謙 丁卯.), 종사관 강대진을 경상우도의 거점 중의 하나인 진주로 보내어 그 지역의 의병 모집을 독려하기도 하였다(강대수, 『寒沙集』 권5. 祭文. 始祖殷烈公廟祭文. 丁卯以號召使從事官 巡到晉州而祭之.).

정들을 날짜별로 잘 보여주고 있다. 예안현에서는 정묘호란 소식을 접한 후 바로 유력 사족들이 모여 의병을 일으킬 것을 논의하였다. 문제는 의병장을 누가 맡는가라는 것이었는데, 서로 맡기를 상당히 꺼려하면서 갈등이 야기되고 이리 저리 눈치 보는 상황이 야기되었다. 한달동안 의병장이 금업 → 이영도 → 김광계 → 금업으로 계속 바뀌었던 것이다.

장현광과 정경세 호소사 막부의 구체적인 진용이나 활동상에 대해서는 문헌에 자세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다만 여러 문헌에 실려 있는 단편적인 기록들을 통해 막부의 편성 상황의 일부를 짐작할 수 있을 뿐인데, 그 상황을 모아 제시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³⁸⁾

〈표〉 경상도호소사 막부 구성원

성 명	직 입	거주지	비 고
장현광	경상좌도호소사	인동	
정경세	경상우도호소사(상사)	상주	류성룡 문인
이 준	調度使(管糧官)	상주	류성룡 문인
김 녕	장현광 종사관	선산	장현광 문인
이민환	장현광 종사관	의성	장현광 문인, 이민성의 제
배상룡	장현광 참모	성주	장현광 문인
이지화	餉軍 主管	성주	장현광 문인. 병자의병
이윤우	정경세 종사관	칠곡	
강대진	정경세 종사관		강대수로 개명
박 한	정경세 종사관		
이민성	경상좌도의병대장	의성	장현광 문인, 이민환의 형
박 민	경상우도의병대장	진주	장현광 문인

38) 이 표는 인조실록, 여헌집, 우복집, 창석집, 신적도의 창의록, 수암집, 계암일록, 한사집, 영천사난창의록 등에 산견되는 내용에 근거하여 작성한 것이다. 다만 의성 지역의 경우 의병장으로 신적도와 권수경 두 사람이 파악이 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의병장으로 활약한 것은 분명한 듯한데, 한 지역에 두 명의 의병장이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두 사람 사이에 지위의 상하관계나 교체에 따른 선후관계가 있었는지 현재로서는 확인할 길이 없다. 후손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어서 권수경 측의 다음의 기록이 남아있다. 『自樂堂先生實蹟辨證錄』(『한국역대문집총서』 권2277. 『自樂堂遺集』 소재. 1997. 경인문화사).

신적도	의병장	의성	장현광 문인, 신달도의 형
권수경	의병장	의성	정구 문인
김 수	의병장	선산	장현광 문인
이천봉	의병장	성주	
이현룡	의병장	고령	
장경우	의병장	인동	
김시추	의병장	안동	
이영도	의병장	예안	김광계, 금업 순으로 교체
권 주	의병장	榮川	
장여한	의병장	예천	
곽 진	의병장	풍기	
권극명	의병장	봉화	
김 위	의병장	진보	
조준도	의병장	청송	장현광 문인
이시명	의병장	영해	
정윤목	의병장	용궁	
손 해	의병장	永川	
류 진	의병장	상주	류성룡의 아들
장문익	12읍 의병장	창원	장현광 문인
노극복	의병장	고성	

장현광과 정경세는 경상도 일대에 포진되어 있던 그들의 동문과 문인들을 바탕으로 하여 막부를 구성하였다. 종사관과 참모를 두어 막부의 업무를 보좌케 하는 한편 경상도를 좌·우도로 크게 나누어 각각 의병대장을 두고 그 아래에 각 군현 단위로 의병장을 선임하였다. 별도로 막부에 관량 관管糧官을 따로 두고 각 지역에는 관량유사管糧有司를 따로 두어 군량 수집을 총괄케 한 것도 하나의 특징이었다.

이렇게 차임된 각 군현의 의병장들은 다시 각 면 단위로 책임자를 두어 의병과 군량을 모우는 일을 책임지웠다. 의성의 의병장인 신적도가 의성의 각 면에 보낸 일종의 지침이 남아있어 당시 구체적 상황을 살피는 데 참고가 된다. 그가 의성현의 각 면에 내려 보낸 지침은 총 1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주요한 내용을 편집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³⁹⁾

- 전직 한량관, 납속 점장인, 공천과 사천을 막론하고 향리, 역리, 사포수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젊고 건장한 이들이면 아울러서 지체없이 데리고 와야 한다.
- 활을 잘 쏘거나 포를 잘 쏘는 자가 비록 고을 사람에게 죄를 저질렀더라도, 그가 마음을 돌리어 의로운 생각을 품었다면 역시 의병 모집에 응모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 고을 유생 중 늙고 병들고 잔약하면서도 젊은 자손이 없는 자는 마땅히 건장한 노비로 대행하게 한다. 마땅한 노비까지 없어 군량미로 대신 내기를 원하면 허락한다.
- 군량미를 마련할 때 약속 기일이 되었는데도 내지 아니 하면 마땅히 중벌을 주어야겠지만 우선 관곡으로 대신 내주어야 한다.
- 만일 재물 많은 사람이 곳간을 기울여 있는 재물을 다 내놓고자 하면, 각별하게 긴급히 보고하고 그 사람의 성명을 상세히 적은 책을 만들어 두루 알려야 한다.

이상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의병 모집은 신분과 직임을 불문하고 젊고 건장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무기에 재능이 있는 사람이면 비록 죄인일지라도 활용하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족의 경우 집안에 건장한 젊은이가 없는 경우는 건장한 노비로 대신케 하고, 그도 불가능할 경우에는 군량미로 대신케 하였다. 군량미를 혹 제 때에 맞추어 내지 못할 경우에는 관곡을 빌려서라도 내게 하였으며, 그리고 많은 양의 군량미를 내는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 대접을 하게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방침은 다른 군현에도 대동소이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호소사 정경세는 2월 8일 옥성에 도착하여 조정에 서장을 올렸으며, 14일에는 함창, 16일에는 용궁, 17일에는 예천, 20일에는 안동을 각각 순행하였다.⁴⁰⁾ 그리고 2월 27일에 경상도 지역의 18읍 의병장과 참모

39) 신적도. 『虎溪遺集』 권3. 「창의록」. 諭各面募粟有司文 後錄.

40) 『우북집별집』 권6. 「연보」. 인조 5년 2월 해당조; 『국역우북집』 권5. 36-37쪽.

들을 함창에 모아 앞으로의 일정을 논의하였는데, 3월 10일에 충주에 의병 전체가 집결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고 한다.⁴¹⁾ 이때는 각 군현별로 집결할 의병 인원이 할당되었는데, 안동부는 100명, 예안현은 15명을 할당받았다.⁴²⁾ 이렇게 한달여의 기간동안 장현광과 정경세는 도내에 격문을 돌리고 여러 군현을 순행하면서 의병을 모우고 군량을 조달하였다. 그리고는 경상도 의병 전체를 세 개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한강 방어처로 북상시키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 후 화의를 맺은 후금군이 물러갔기 때문에 군사를 과한다는 국왕의 유지를 3월 8일에 받고 군사들로 하여금 돌아가 농사를 짓게 하였다.⁴³⁾ 그리고 그동안에 의병과 의곡을 모으는데 적극적으로 나서는 중심적 역할을 하였던 의병장들에 대한 추천과 보고를 하면서 호소사 활동은 마무리되었다. 선산의 김수, 고성의 노극복, 성주의 이천봉, 고령의 이현룡, 의성의 권수경, 인동의 장경우 등을 적극 추천하였다.⁴⁴⁾ 그리고 그 외 군량을 조금씩 낸 사람도 따로 조도사調度使 이준李竣으로 하여금 올리게 하여 규례에 따라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⁴⁵⁾

이렇게 장현광과 정경세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영남이라는 한 후방 지역을 맡아 잘 대처하였다. 장현광은 양호지역을 담당한 김장생과 함께 산림으로서의 위망을 잘 보여주었다. 다만 장현광은 호서와 호남 두 지역을 모두 맡은 김장생과는 달리 영남 한 지역을 정경세와 분담하여 맡았다. 형식적으로 볼 때 집권 서인계 산림이었던 김장생과 남인계 산림이었던 장현광의 차이였다. 그리고 영남지역에 있어서도 장현광은 정경세와 나누

41) 『계암일록(하)』 권5. 인조 5년 2월 23일. 2쪽. 3월 1일. 3쪽.

42) 『계암일록(하)』 권5. 인조 5년 3월 1일. 5일. 3쪽.

43) 『우북집별집』 권6. 「연보」. 인조 5년 3월 8일.

44) 『우북집별집』 권1. 북명하는 계[정묘년(1627. 인조 5)에 호소사로 있을 때 올린 것이다]. 『국역우북집』 권4. 72-73쪽.

45) 『인조실록』 권16. 인조 5년 5월 1일 병인. 이에 이준은 쌀 10석(租 20석)이상 낸 자의 명단을 따로 작성하여 올렸다(『蒼石集續集』 권3. 丁卯疏. “今將準米十石正租二十石以上者 抄啓姓名 并宜速施恩典”).

어 담당한 가운데 오히려 정경세가 약간 우위에서 호소사 활동을 주도한 느낌이었다. 집권세력의 산림인 김장생과 주변세력의 산림인 장현광의 차이, 퇴계학통 상에서의 위치가 뚜렷하였던 정경세와 비교적 덜 선명하였던 장현광의 차이, 개인적인 성향이나 능력의 차이 등이 작용된 결과였다. 당시 장현광의 정치사회적 위상과 좌표가 설정되는 지점이다.

IV. 복제와 추송 관련 예론의 개선

인조는 정상적인 승계가 아닌 반정에 의해 왕위에 올랐다. 선조의 제 5자 정원군定遠君의 아들인 인조는 종통상으로는 손자로서 조부인 선조의 뒤를 잇게 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정통성 문제를 확고히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반정 주체 세력들도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

정통성 확립의 완결은 인조의 생부生父로서 반정 전에 죽은 생부 정원군의 추송이었다.⁴⁶⁾ 정원군을 왕으로 추송하여 선조의 적통을 정원군(후일 원종)을 거쳐 인조에게 이어지게 함으로써 정통성을 한층 확고하게 굳히려고 한 것이다. 원종의 추송은 10여년 동안 수차에 걸친 전례 논쟁을 거치면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다. 1차는 반정직후인 인조 원년 인조와 정

46) 원종 추송과 관련한 연구로는 다음의 논고들이 참고가 된다. 이영춘. 1990. 『잡야 박지계의 예학과 원종추송』. 『청계사학』 7; 우인수. 1991. 『조선 인조대 정국의 동향과 산림의 역할』. 『대구사학』 41; 이현진. 2000. 『인조대 원종추송문의 추이와 성격』. 『북악사론』 7; 장세호. 2009. 『원종의 추송문제』. 『한국사상과 문화』 50. 한편 장현광의 원종 추송 관련 예론에 대해 분석한 글로 장동우의 논문이 있다.(2005. 『여헌 장현광의 예설과 예학적 문제의식』. 『유교사상연구』 24.) 하지만 장현광의 주장이 가지는 당시 정국에서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지 못하여 온전한 이해에는 부족한 한계가 있다.

원대원군 간의 관계 설정에 따른 호칭 문제를 두고 일어났고, 2차는 인조 4년 인조의 생모인 계운궁의 사망에 따른 인조의 복제 기간을 두고 일어났다. 3차는 인조 8-10년의 원종 추숭 논쟁이었고, 4차는 인조 12년 원종의 종묘 배향을 둘러싼 논쟁이었다. 단계마다 상당한 진통과 갈등이 수반되었다.

반정직후 인조의 생부인 정원군은 당연히 정원대원군定遠大院君으로 추존되었으며, 여기에는 아무런 이견이 있을 수가 없었다. 다만 인조의 정원대원군에 대한 호칭 문제가 제기되면서 논란이 시작되었다. 정원대원군의 제사를 맞이하였을 때 인조가 제문의 두사頭辭에서 생부를 어떻게 칭하는 것이 예에 합당한가의 문제였다. 아울러 인조가 의리상 입어야 할 상복의 종류와 합당한 묘향의 형태가 함께 제기된 문제였다.

국가적 전례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이를 논의할 수 있던 신하들은 크게 두 부류였다. 한 부류는 예에 대한 식견을 지닌 조정의 중신들이고, 또 하나의 부류는 예에 밝은 재야의 학자들이었다. 중신 중에서 자신의 독자적인 논리를 내세워 의견을 표출한 대표적인 중신은 예조판서 이정구, 부제학 정경세를 위시하여 조익, 장유, 최명길 등이었다. 재야 학자로는 당대의 산림인 김장생과 박지계가였다. 나머지 여러 신하들의 의견은 대개 위의 사람들이 내세운 논리 중의 하나와 비슷하였다.

산림인 장현광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개진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 같은 산림으로 인조반정직후 함께 징소받았던 김장생과 박지계가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개입하여 분명한 자신의 설을 개진한 것과는 대조되는 부분이다.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견해를 피력하여 양 극단의 주장을 폈다. 김장생은 집권세력인 서인의 정신적인 지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주장은 무게감이 상당히 컸다. 박지계는 주로 공신들의 지지하에 원종 추숭을 적극 주장하는 이귀나 최명길에게 이론적 논리를 제공하였다. 장현광이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한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는 없다. 남인 중에서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이

는 부제학으로 있던 정경세였다. 정경세와 모종의 논의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에 알려져 있는 자료에서는 그 부분도 확인이 되지 않는다.

설사 장현광이 이 문제에 대해 개진한 사실이 있었는데, 관련 자료가 현전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가능성도 그리 크지 않다고 판단한다. 또한 설사 개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의 주장이 당시 논쟁에서 큰 역할을 하지 못하였던 것은 분명한 사실인 듯하다. 일단 조선왕조실록에 그의 설이 실리지 않은 것은 그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숙종대의 산림으로 활동하였던 남계 박세채가 이 문제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설을 분류 정리한 논설에서도 장현광은 등장하지 않기 때문이다.⁴⁷⁾ 박세채가 분류하여 제시한 논설은 후일 이공익의 『연려실기술』에도 거의 비슷하게 정리되어 전하고 있다.

김장생은 제왕가의 승통을 중시하는 입장에 서서, 인조는 선조에게 ‘부자지도父子之道’가 있으므로 정원대원군에 대해서는 백숙부伯叔父라 칭해야 한다고 하여 정원대원군을 종통에서 배제하는 철저한 예론을 내세웠다.⁴⁸⁾ 그리고 박지계는 정원대원군을 종통에 적극 포함시키려는 입장에 서있었다. 그는 ‘방친위인후자傍親爲人後者’와 ‘손위조후자孫爲祖後者’의 경우를 명백히 구별하여 인식하였는데, 인조의 선조에 대한 경우는 손자로서 할아버지를 계승한 ‘손위조후자孫爲祖後者’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

47) 『南溪集』 권64. 章陵稱號尊崇考證. 박세채가 인조의 정원대원군에 대한 칭호와 복제에 관한 여러 학자들의 주장을 정리한 논설을 필자가 약간 가감하여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관료 구분	鄭經世 李廷龜	趙 翼	金長生	張 維	崔鳴吉	朴知誠
祭文 稱號	考	考	伯叔父	考	考	考
服喪	不杖期	不杖期	不杖期	杖期	三年	三年
廟享	綾原君主祀	綾原君主祀	綾原君主祀	別廟	別廟	禰廟
論據	稱;禰位闕 服·廟;爲 人後	稱·服·廟 ;爲人後	稱·服·廟 ;爲人後, 重位次	稱;爲祖後 服·廟;爲 宗統	稱·服;爲 祖後 廟;爲宗統	稱·服· 廟;爲祖後 , 重血統

48) 『인조실록』 권2. 인조 원년 5월 3일 임진.

았다. 따라서 정원대원군에 대해서는 고考的 칭호를 쓸 수 있고, 상복도 참최삼년복斬衰三年服을 입을 의리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⁴⁹⁾

이 문제는 김장생과 박지계가 대책 지점에서 서로 대립하는 가운데, 조정 중신들에 의해 조정되어 시행되었다. 예조판서 이정구와 부제학 정경세는 선조와 인조간에 중통상으로는 ‘부자지도父子之道’가 있음을 인정하였으나, 다만 인조가 선조의 아들이라 한다면 정원군과 인조는 형제간이 되어야 하는 무리가 있다는 점과 또한 칭고稱考할 대가 없게 되어 친륜에 어긋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정원군을 고考라 칭할 수밖에 없다는 다소 융통성있는 예론을 폈다.⁵⁰⁾

이에 호칭 문제를 둘러싸고는 저마다의 논리적 근거는 상이하였지만 다수가 주장한 고考로 칭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이 문제는 논리적 근거야 어떻든 표면상으로는 고라고 칭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잠복되어 있었다.

인조 4년 인조의 생모 계운궁啓運宮 구씨具氏가 사망함으로써 이 문제는 다시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인조가 생모의 상에 입어야 할 상복의 종류가 논쟁의 핵심이었다.⁵¹⁾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생부 정원대원군에 대한 처우와 직접 연결되는 것이었다. 대개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 입는 상복은 3년복이 상례였다. 하지만 인조의 경우는 선조의 뒤를 이어 왕통을 이은 특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가의 친부모를 위한 상복은 3년복에서 강복降服한 기년복이 마땅한 예였다.

계운궁의 병세가 위독할 때 삼의정인 이원익·윤방·신흠과 예조판서 김상용이 모여 논의한 결과 역시 삼년복에서 강복하여 불장기不杖期로 정하였고, 정경세를 비롯한 조정의 의론도 대개 옳게 여겼다. 인조의 경우는 선

49) 『潛治集』 권1. 응지소. 갑자(인조 2년).

50) 『인조실록』 권2. 인조 원년 5월 7일 병신.

51) 인조의 계운궁에 대한 복제 문제를 둘러싸고 전개된 논쟁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고를 참고하라. 서인한. 1989. 『인조초 복제 논의에 대한 소고』. 『복약사론』 1; 이현진. 2003. 『17세기 전반 계운궁 복제론』. 『한국사론』 49.

조의 대통을 이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중에 압존되어 사친私親을 위해 정리를 펼 수 없는 것이 천지의 상경常經이요 고금의 통의通誼라는 논리였다.

반정공신인 부제학 최명길과 연평부원군 이귀는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그들은 왕통의 계승을 이유로 생부의 상복을 낮출 수는 없다고 하면서 삼년복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었다. 인조는 친모를 높이려는 인정에 끌려 후한 상복을 입는 쪽에 좀 더 솔깃해하였다. 인조는 자신이 이미 정원대원군을 고려라 칭하고 스스로 자자라 칭하고 있는 이상 삼년복을 입는 의리가 있으니, 생모의 상에 삼년복을 입어야겠다고 고집하였다.⁵²⁾ 이러한 인조의 뜻에 적극 영합한 인물이 공신인 이귀와 최명길이었는데, 그들의 논리적 근거는 박지계에게서 비롯된 것이었다.⁵³⁾

이렇게 부장기론不杖期論과 삼년복론三年服論이 맞선 가운데 다수의 의견에 따라 삼년복제는 채택되지 않았다. 인조는 삼년복을 포기하는 대신 기년은 기년이되 부장기가 아닌 장기로 하기를 고집하여 집행하였다.⁵⁴⁾ 이는 인조가 상주가 되고자 하는 의도에서였다. 그러나 상주도 결국은 동생인 능원군이 맡는 것으로 결정되었다.⁵⁵⁾ 역시 다수 중신과 예론가의 논의가 관철된 것이었다.

이 계운궁에 대한 인조의 복제 논쟁이 한창 벌어졌을 때도 장현광은 이 문제에 대해 직접 의견을 개진한 바는 없다. 다만 그는 논쟁이 일단락된 수개월 뒤인 계운궁의 발인에 참석하기 위해 상경하였을 때 군주의 건극을 주장하면서 올린 상소에서 이 복제 문제에 대해서도 곁들여 논급한 바 있다.

52) 『인조실록』 권11. 인조 4년 1월 14일 무오·15일 기미.

53) 『潛治集』 권1. 擬上疏. 병인. 이미 인조 원년부터 정원대원군을 종통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예론을 폄되던 박지계는 이때도 같은 논리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상소를 써두었다. 이 상소는 비록 조정에 올리지는 않았으나 그 내용은 중형 박지양 등에 의해 요로에 충분히 배포되었다고 한다. 이영춘, 1990. 『잠야 박지계의 예학과 원종추송』, 『청계사학』 7. 253쪽.

54) 『인조실록』 권11. 인조 4년 1월 15일 기미. 19일 계해.

55) 『인조실록』 권11. 인조 4년 1월 23일 정묘.

오늘날의 喪禮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服制의 의논에 있어 조정의 소견이 서로 달라서 지나치거나 미치지 못한 兩端이 없지 않았는데, 전하께서 절충하여 결정해 쓰셨으니, 中이라 이를 만합니다. 다만 듣건대 지난번 禮葬의 의논에 있어 규모를 크고 무겁게 했다 한 것은 時中の 마땅함에 지나침이 있는 듯합니다. 이것은 대개 일을 집행하는 여러 관원이 전하의 지극한 정성을 본받아 모든 儀物과 品數를 힘써 구비하고 화려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 예란 중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대개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으면 효자의 마음이 편안할 수 없는 것이고, 지나쳐선 안 되는데도 지나치게 하면 돌아가신 아버지의 마음이 편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이면서도 중을 지킨 이후에야 아버지의 마음이 편안하고 효도가 되는 것입니다. 요사이 일은 기왕지사니 말할 필요가 없으나 앞으로 또한 裁定할 의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감히 언급하여 후일 더욱 신중을 기하라는 뜻을 붙입니다. …… 더군다나 임금의 행위는 일시의 법이 될 뿐만 아니라 후세에 본받게 되니 어찌 감정대로 제도를 넘어서 표준을 세우는 도리를 해쳐서야 되겠습니까.⁵⁶⁾

장현광은 계운궁의 상례와 관련하여 인조가 3년복을 고집하지 않고 기년복을 따른 사실을 군주로서 ‘중’을 택한 것으로 높이 평가하였다. 그리하여 간접적으로나마 기년복의 타당성을 개진한 것으로 의미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예장의 규모가 크고 무겁게 한 점은 ‘중’을 지키지 못한 조처로서 후일을 위해 경계할 부분이라고 하였다. 결국 인조가 사친에 대해 예를 벗어나 과중하게 예우하는 것을 완곡하게 경계한 것이었다. 이는 원종 추숭과 같은 사친에 대한 과중한 예의 적용의 부당성을 미리 경계한 셈이었고, 후일 실제 원종 추숭이 강행되자 장현광은 그 부당성을 분명하게 개진하는 것으로 연결되었다.

원종 추숭 문제는 인조 8년경에 이귀의 차자로 인해 조정의 쟁점으로 다시 부각되었다.⁵⁷⁾ 인조 7년(1629년) 산해관 방면을 지키고 있던 명의

56) 『인조실록』 권12. 인조 4년 5월 28일 기사.

57) 『인조실록』 권23. 인조 8년 10월 28일 계유.

장군 원숭환袁崇煥에게 재자사齎咨使의 임무를 띠고 해로를 통해 파견되었던 최유해崔有海가 잘못하여 등주登州에 표류한 바 있었다.⁵⁸⁾ 그는 마침 이곳에서 명군의 군량을 감독하는 임무를 띠고 와 있던 명의 호부낭중戶部郎中 송헌宋獻을 만났다.⁵⁹⁾ 두 사람이 대화를 하던 중 화제가 원종의 추숭에까지 이어졌고, 급기야 송헌은 원종의 추숭이 당연하다는 논지의 예론을 글로 지어 준 바 있었다.⁶⁰⁾

이를 최유해의 친구 홍진도를 통해 입수한 이귀는 송헌과 박지계의 주장이 일치하니 가히 천하의 공의라고 하면서 추숭을 강력하게 주장하게 되었던 것이다.⁶¹⁾ 이에 인조도 원종추숭을 통해 왕통을 더욱 확고하게 굳히면서 생부모生父母에 대한 사사로운 인정상의 의리를 다하고자 하였다. 인조는 명에 주청하여 처리할 것을 주장하면서까지 이의 관철에 집착하였다.⁶²⁾

이러한 사태에 직면하여 대부분의 예학자와 관료들은 추숭에 반대하였다. 그런데 그동안 논란이 있을 때마다 합당한 논리를 제공하던 이들은 이즈음 하나 둘 세상을 떠나고 있었다. 김장생이 인조 9년에 사망하였고, 정경세는 추숭에 반대하며 사퇴한 후 병환으로 시달리다가 인조 11년에 사망하였다.⁶³⁾ 공신인 좌의정 김류는 추숭에 반대하다가 면직을 당하였다.⁶⁴⁾

좌의정 김유의 면직과 주청사의 파견 소식을 접한 장현광은 상소를 올릴 것을 결심하였다.⁶⁵⁾ 그는 속히 추숭을 의논하라는 명을 거두고 중국 조정

58) 『인조실록』 권21. 인조 7년 9월 6일 정해; 『앞의 책』 권23. 인조 8년 12월 4일 무신.

59) 호부낭중 송헌이 이듬해인 1630년에도 군량 감독의 임무를 띠고 여순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최유해와 등주에서 조우한 것은 사실인 듯하다. 『明懷宗實錄』 권3. 庚午年(회종 3년. 1630년).

60) 『연려실기술』 권22. 『元宗仁獻王后追崇』. 인조 8년 11월조.

61) 『인조실록』 권23. 인조 8년 12월 8일 임자.

62) 『인조실록』 권24. 인조 9년 4월 20일 계해.

63) 정경세는 인조 9년 6월 이후 병세가 점점 깊어져 정신이 혼모함이 심해져서 자제의 이름자를 모두 잊어버릴 정도에 이르렀다. 이런 상태로 지속되다가 11년 1월에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위독하였고 약간의 차도가 있다가 6월에 졸하였다.

64) 『인조실록』 권24. 인조 9년 4월 30일 계유.

65) 『국역 여헌속집』 권9. 부록. 『취정록』(문인 신열도). “신미년(1631년 인조 9) 초여름에 나는 부지암으로 와서 선생을 뵈고 하루를 머물며 모셨는데, …… 이 때 인조의

주청하지 말 것을 청하였다.⁶⁶⁾ 상소에서 장현광은 정원대원군이 생전에 왕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종묘에 들일 수 없음이 원칙임을 분명히 하였다. 그리고 공을 높이는 데도 몇몇한 분수가 있음을 말하고 그 분수를 넘어서서 공을 높이는 것은 오히려 어버이를 해치는 일이라고 강조하였다.

큰 강령을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帝王의 宗統의 체계와 형세는 자연 천지의 몇몇한 법과 고금에 통행하는 의리가 있어서 바꿀 수 없습니다. 천하에 있으면 천하의 한 사람이 되고 한 나라에 있으면 한 나라의 한 사람이 되니, 반드시 皇天의 명령을 받고 祖宗의 전통을 이어받으며 臣民의 위에 군림하고 神人의 부탁에 응한 뒤에야 살아서는 제왕이라는 큰 이름을 누리고 죽어서는 太廟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천지의 몇몇한 법이요, 고금에 통행하는 의리’라는 것이니, 진실로 인위적으로 조금이라도 더하거나 덜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효를 지극히 하는 방도는 이미 따로 정해진 도리가 있사옵고, 공을 높이는 의리 또한 따로 몇몇한 분수가 있사옵니다. 비록 효를 지극히 한다 하더라도 定理에 위배됨이 있으면 효를 지극히 하는 것이 아니며, 비록 공을 높인다 하더라도 몇몇한 분수에 넘침이 있으면 공을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추존해서는 안 되는데 추존한다면 어버이를 추존한다는 것이 도리어 어버이를 해치는 것이며, 높여서는 안 되는데 높인다면 군주를 사랑한다는 것이 도리어 군주를 해치는 것이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으며, 삼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⁶⁷⁾

그리고 추승론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칙에 맞지 않게 건강부회하는 잘못을 지적하였다. 추승론자들은 종묘에 예위 禰位 즉 아버지 사당이 빠

생부를 추승하자는 의논이 크게 일어났다. 그리하여 좌상 김류가 임금의 뜻을 거슬러 파직당하였다. 내가 여쭙기를, ‘추승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니, 선생은 대답하시기를, ‘주 나라 때에 태왕과 王季와 文王이 다 공덕이 있어서 주 나라가 천하를 소유한 것이 이 세 왕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주공이 왕의 예로써 이들 세 분을 추존한 것이니, 만약 주 나라 세 왕과 같은 공덕이 없으면서 추승한다면 예가 아니다.’ 하였다. 그 후 선생은 상소문을 올려 간절하게 말씀하였다.

66) 『인조실록』 권24. 인조 9년 6월 4일 병오.

67) 『국역 여헌집』 권3. 추승을 중지할 것을 아뢰는 소.

진다는 점을 강조하지만 이는 형편상 빠지지 않을 수 없었던 사정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데서 비롯된 부족한 생각이라고 하였다. 형편상 빠지지 않을 수 없어서 빠진 것은 이치에도 당연하며 정통의 의리에도 해로울 것이 없다는 주장이었다. 아울러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이치에도 맞지 않는 추송 논의를 중국에 주청하는 것은 천하의 비웃음거리가 되는 국가적 수치이기 때문에 주청하려는 계획을 중지할 것도 청하였다.

인조는 중국 조정에 주청하는 것은 타당치 못한 듯하였기 때문에 이미 정지시켰다는 내용의 비답을 내렸다. 장현광의 상소와 별개로 중국 조정에 주문하는 것은 정지된 상태였던 것이다. 그러나 추송 자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급이 없었으니, 인조는 추송 작업을 멈출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이다. 장현광은 자신의 상소와 인조로부터 받은 비답을 당시 참의 벼슬을 하던 이윤우의 요청으로 그에게 전달하여 참고 자료로 활용케 하기도 하였다.⁶⁸⁾ 하지만 장현광의 상소나 노력도 추송론자들의 논의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많은 이론가들이 병이나 노쇠로 인해 제대로 된 반론의 전선을 형성하지 못하는 틈을 타고 추송론자들이 힘으로 밀어붙였다. 인조는 추송에 반대하는 유생과 관료들을 처벌하면서 강경하게 대응하였다.⁶⁹⁾ 그리고 이귀를 이조판서에 임명하여 인사권을 맡기면서 힘을 실어주었다.⁷⁰⁾ 추송

68) 『국역 여헌속집』 권9. 부록. 『취정록』(문인 조임도). “신미년(1631.인조9) 여름에 선생을 뵈오니, 선생은 상소한 글과 임금의 비답을 임도에게 맡겨서 참의 李潤雨 어른께 갖다 드리게 하였다. 이때에 국가에서 추송하는 일이 있었는데 선생이 글을 올려 강력히 간하였는바, 李丈이 그 비답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선생이 보내신 것이었다.”

69) 인조 9년 9월 추송론의 이론적 제공자로서 비난의 표적이 된 박지계가 유생들에 의해 儒籍에서 삭제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주동자인 許穆이 이귀의 청에 의해 停擧 처분을 당하였다.(『인조실록』 권25. 인조 9년 9월 18·27일 기축·무술) 박지계를 蓼蟲이라 하며 매도한 바 있던 趙綱은 知禮縣監으로 좌천되었으며,(『인조실록』 권25. 인조 9년 9월 4일 을해) 그 외 이귀를 비난하였던 執義 金世謙, 掌書 李軻·朴安悌 등도 외직으로 黜補되었다.(『인조실록』 권25. 인조 9년 윤11월 23일 임술)

70) 『인조실록』 권25. 인조 9년 11월 25일 갑오.

에 우호적인 사람들로 관직을 채우기 위함이었다. 드디어 인조 10년 최명길이 예조판서로 있으면서 추송 작업을 완전히 마무리하였다.⁷¹⁾ 선조 → 원종 → 인조로 왕통이 내려오는 것으로 새롭게 정리되었다.

원종의 추송이 마무리된 후인 인조 12년(1634)에는 그 후속 조치로서 종묘와 별묘 중 어느 곳에 원종을 모시는 것이 타당한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추송론자들은 당연히 종묘에 모셔서 추송론을 완결하고자 하였고, 다수의 조정 신하들은 종묘에 모실 수 없는 논리로 맞서고 있었다. 이 문제에 대해 장현광도 종묘에 들어 모시는 것의 불가함을 상소를 통해 개진하였다.

전하께서 친부모에게 효도를 바친 것이 이미 극진합니다만, 그것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너무 지나치다고 의아하게 여기고 있는데, 더구나 다시 부모를 위하여 태묘에 올려 모시는 일이겠습니까. 이는 옛날의 예에 근거할 만한 것이 없으니, 그야말로 无妄에서 다시 행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효도를 하려 했다가 도리어 효도에 해를 끼치고 일을 행하려 했다가 도리어 인에 해를 끼치게 되니, 이는 마땅히 정밀하게 살피고 한결같이 하는 공부를 지극히 하여야 할 분계선입니다.⁷²⁾

장현광은 태묘 즉 종묘에 원종을 모실 예학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에 대해 인조는 종묘에 모시는 것의 타당성을 다음과 같은 논리로 설명하는 비답을 내렸다. 고금 천하에 예위가 없는 종묘는 있을 수 없다는 점, 지금의 별묘는 후세에 가면 더욱 불편하게 된다는 점, 명에서 인정과 예법을 밝게 살펴 흔쾌히 은봉(恩封)을 내렸다는 점, 선조는 사자(嗣子)가 없다가 사자가 생기고 종묘는 예실이 없다가 예실이 생기게 된다는 점 등을 들었다.

71) 『인조실록』 권26. 인조 10년 2월 24일 임진에 追崇都監이 설치되었고, 李貴와 崔鳴吉이 提調에 임명되었다.

72) 『국역 여헌집』 권3. 소. 祔廟를 정지할 것을 청하는 소; 『인조실록』 권30. 인조 12년 윤8월 9일 임진.

이 비답을 받은 장현광은 반박하는 상소를 다시 올리는 대신 자신의 주장을 비답의 아래에 써두는 것으로 자신의 의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주상께서 비록 방손의 列에 있다 하더라도 한때의 변을 만나 대위에 올랐다. 그렇다면 낳아 준 생부모는 그대로 선조의 支子일 뿐이요, 주상의 私親이 됨에 불과하니, 별묘에 추존하는 것도 오히려 너무 과하다. 어찌 태묘에 들어가 正位에 거할 수 있겠는가. 이제 비록 황제의 은혜로운 책봉이 있으나 또한 별묘에서 제향을 올리는 것이 옳을 것이다. 또 별묘에 편안히 있는 것이 어찌 들어가지 않아야 할 정위에 들어가 불안한 것과 같겠는가. 또 비록 별묘에 제향한다 하더라도 자연 주상을 낳아 준 아버지가 되니, 어찌 아버지대가 없다고 이를 수 있겠는가. 비록 ‘정밀하게 살피라’는 명령을 받들었으나 노망한 소견은 필경 이와 같을 뿐이다. 몸이 궁벽한 시골에 있어 감히 다시 아뢰 수 없으므로 이에 간략한 말을 批旨 아래에 쓰는 바이다.⁷³⁾

이 정도에서 마무리될 수 있었던 장현광의 상소는 얼마 뒤 추승론자인 최명길에 의해 잘못 인용됨으로써 약간의 파란이 일기도 하였다. 장현광이 종묘에 들이는 것의 불가함은 분명하게 진달하였으나, 한편으로 별묘를 종묘 가까이 옮기는 대안을 제시한 것이 빌미를 준 듯하다.

신은 엿드려 듣자오니, 別廟가 태묘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人情에 편안하지 못하다 하오니, 神道는 인정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제 만약 별묘를 태묘와 가까운 곳에 옮겨 봉안한다면 列聖朝는 돈독히 강림하는 비호가 있을 것이요, 별묘는 태묘와 가까운 편안함이 있어서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가운데 유통하고 오르내리며, 때에 따라 제사를 올릴 적에 똑같이 한 吉日을 쓴다면 사세에 편안하고 인정과 이치에 모두 합당할 것이오니, 이는 바로 높이 받들고 소중히 하는 극치일 것입니다.⁷⁴⁾

73) 『국역 여헌속집』 권4. 잡저. 祔廟의 상소에 대한 批旨의 뒤에 쓰다.

74) 『국역 여헌집』 권3. 소. 祔廟를 정지할 것을 청하는 소; 『인조실록』 권30. 인조 12년 윤8월 9일 임진.

장현광의 이 대안은 본인의 뜻과는 달리 추송론자인 최명길에 의해 엉뚱하게 인용되면서 그들에게 이용당하는 꼴이 되었다. 이조판서 최명길은 “장현광의 상소를 보아도 종묘에 들이자는 논의와 차이가 매우 적었다.” 라고 하면서 장현광의 별묘 이전 대안을 자신의 설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자료로 이용하였던 것이다.⁷⁵⁾

이상과 같이 원종 추송과 관련하여 추진된 일련의 전례 논쟁에서 장현광은 자신의 예학에 대한 학문적 지식을 제공하였다. 1단계 논쟁인 인조의 정원대 원군에 대한 제문의 두사 칭호 논쟁과 이단계인 계운궁 복제 논쟁에는 직접적으로 예론을 개진하지는 못하였다. 2단계 논쟁과 관련하여서도 때늦은 감은 있지만 계운궁의 장례시에 예장의 규모를 크고 무겁게 한 점을 지적함으로써 인조가 사친에 대해 예를 벗어나 과중하게 예우하는 것을 경계한 점은 있다. 이후 3단계 논쟁인 원종의 추송과 4단계 종묘 배향 논쟁에 대해서는 그 부당성을 분명하게 지적하는 의견을 올렸다. 하지만 원종의 추송과 종묘 배향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산림학자로서 처음부터 전례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점은 그의 어쩔 수 없는 현실적 한계로 남겼다.

V. 맺음말

인조대에 산림으로 정소된 장현광의 정치적 활동을 살핌으로써 당시 중앙정계와 영남지역 내에서의 그의 위상을 가늠하고 설정하고자 하였다.

인조대의 정국은 서인이 주도하는 가운데 약간의 남인이 참여한 상태로 전개되었다. 중앙정계로부터 주목을 받은 영남 남인 출신의 산림은 장현광이었다. 그는 서인 산림인 김장생·박지계와 함께 특별한 예우를 받

75) 『인조실록』 권30. 인조 12년 윤8월 23일 병오.

면서 중앙정계에 나아갔다. 장현광의 출사는 반정으로 인해 어수선한 인심을 안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장현광은 몇 차례 상소를 통해 자신이 가진 지식을 중형으로 구사하면서 총론적이고도 원론적인 치국의 방안을 개진하기도 하였다. 군주를 세도의 주인으로 간주하는 군주 중심의 정치 인식 위에 군주가 표준을 세우는 도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에 대한 조정의 기대는 정묘호란이라는 국가의 위기상황 때 잘 드러났다. 조정에서는 삼남지역에 호소사를 배치하여 난국을 극복하려 하였는데, 장현광은 정경세와 함께 영남의 호소사에 임명되어 그 역할을 수행하였다. 또한 계운궁 복제와 원종 추송 등 일련의 왕실의 전례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일어났을 때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당시 정국에서 그의 정치적 활동과 위상을 살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그의 한계도 분명하였다. 산림 중에서는 김장생, 영남지역의 인사로는 정경세가 늘 장현광과 비교가 되는 존재였다. 김장생이 양호호소사에 임명되어 호서와 호남 두 지역을 모두 맡은 데 비해 장현광은 영남 한 지역을 정경세와 나누어 맡은 것이다. 영남을 대표하는 존재이기는 하지만 오로지 하지는 못한 정도의 위치에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학통상에서 정경세는 서애 류성룡을 이어 퇴계학통을 계승했다는 확고하면서도 선명한 부분이 있었다. 이에 비해 장현광은 한강 정구와의 사이에 학통상의 승계를 분명하게 하지 않은 점이 있었기 때문에 퇴계 학통 내에서는 다소 선명치 않은 위상을 가진 셈이 되었다. 비록 당대에는 장현광 자신의 학문적 실력이나 덕망으로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었지만, 퇴계학풍이 주류를 형성해감에 따라 그의 존재감은 한시적이고 제한적이었다. 장현광의 위상은 왕실의 전례를 둘러싼 논의에서도 한계를 드러냈다. 그는 처음 논쟁이 일어났을 때는 적극적으로 논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고, 나중에 참여한 후에도 그다지 중심적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존재감에 있어서 같은 산림인 김장생이나 박지계에 비해 약하였던 것이다.

이상이 남인 산림 장현광이 처한 지점이었다. 높은 위상과 현실적 한계

를 동시에 잘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참고문헌

-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4. 『여헌 장현광의 학문세계, 우주와 인간』. 예문서원.
- _____. 2012. 『여헌 장현광의 학문세계, 여헌학의 전망과 계승』. 예문서원.
- 금오공과대학교 선주문화연구소. 1994. 『여헌 장현광의 학문과 사상』.
- 김학수. 2005. 「17세기 초반 영천유림의 학맥과 장현광의 임고서원 제향 논쟁」. 『조선시대사학보』 35.
- _____. 2009. 「여헌학과의 형성과 전개」. 『여헌 장현광연구』. 태학사.
- _____. 2010. 「17세기 여헌학과 형성과 학문적 성격의 재검토」. 『한국인물사연구』 13.
- _____. 2011. 「17-18세기 의성지역 여헌학과의 동향과 현실대응」. 『선주논총』 14.
- 박병련 외. 2009. 『여헌 장현광연구』. 태학사.
- 박학래. 2005. 「여헌 장현광의 시대인식과 경세론」. 『유교사상연구』 22.
- 서인한. 1989. 「인조초 복제 논의에 대한 소고」. 『복약사론』 1.
- 설석규. 2000. 「여헌 장현광의 이기심성론과 정치철학」. 『이수건정년기념 한국중세사논총』.
- _____. 2007. 『중화탕평의 설계자 여헌 장현광』. 한국국학진흥원.
- 우인수. 1991. 「조선 인조대 정국의 동향과 산림의 역할」. 『대구사학』 41.
- _____. 1994. 「17세기 초반 정국하 여헌 장현광의 위상」. 『여헌 장현광의 학문과 사상』. 금오공대 선주문화연구소.

- _____. 1995. 『조선 인조대 산림 장현광의 사회적 위상』. 『조선사연구』 4.
- _____. 1999. 『조선후기 산림세력연구』. 일조각.
- _____. 2000. 『여헌 장현광과 선산지역의 퇴계학맥』. 『한국의 철학』 28. 경북대 퇴계연구소.
- _____. 2011. 『인조반정 전후의 산림정치』. 『남명학연구논총』 16.
- _____. 2011. 『정묘호란시 삼남지역 호소사의 활동과 그 의미』. 『조선사연구』 20.
- 이수진. 1994. 『여헌 장현광의 정치사회사상』. 『교남사학』 6.
- 이영춘. 1990. 『잠야 박지계의 예학과 원종추승』. 『청계사학』 7.
- 이현진. 2000. 『인조대 원종추승론의 추이와 성격』. 『북악사론』 7.
- _____. 2003. 『17세기 전반 계운궁 복제론』. 『한국사론』 49.
- 장동우. 2005. 『여헌 장현광의 예설과 예학적 문제의식』. 『유교사상연구』 24.
- 장세호. 2009. 『원종의 추승문제』. 『한국사상과 문화』 50.

(2013. 7. 30 접수: 2013. 8. 29 수정: 2013. 8. 30 채택)

우인수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교수. 조선후기 정치사를 전공하고 있다. 최근 논문으로 「우복 정경세의 정치사회적 위상과 현실대응」(2011), 「조선후기 상주 존애원의 설립과 의료기능」(2011), 「조선 선조대 남북분당과 내암 정인홍」(2011), 「17세기 초 경당 장흥효 가문의 제사 관행」(2012), 「목재 흥여하의 현실인식과 대응」(2013) 등이 있다. 조선후기 남인의 현실인식과 대응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E-mail: iswoo@knu.ac.kr